

서울 미래음 대안학교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서울미래음대안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2. “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3조(교육목표) 미래음 실용음악고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고등 보통교육과 예능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4조(명칭) 본교는 서울미래음대안학교라 한다.

제5조(위치) 본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성로 460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6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7조(학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학기) 학년은 2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휴업일)

①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 관공서의 공휴일
1. - 개교기념일(12월16일)
1. -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년말방학 및 단기방학

1. - 주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일 휴무일
1. -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재량휴업일
- ② 제1항의 제3호의 방학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할 수 있다.
- ④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실습을 부과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10조(학과) 본교는 예술계열인 공연예술과(뮤지컬, K-pop 전공)와 실용음악과(기타, 베이스, 드럼, 보컬, 건반, 미디 작, 편곡, EDM 전공)를 둔다.

제11조(학급수) 본교의 학급수는 남녀 공학으로 1학년 2학급, 2학년 2학급, 3학년 2학급, 총 6학급으로 한다.

제12조(학생정원) 본교의 학생정원은 50명 내외로 한다.

제4장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제13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대안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에 따른 교육과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제14조(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 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류학습, 현장(체험)학습을 연간 15일 이내로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교의 '교류·교환학습 및 현장·체험학습 계획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운영은 1일(8시간) 단위로 하되, 반일(4시간) 단위로도 할 수 있다.
- ⑤ 위 ④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경계' 인 경우 교육청 지침에 따라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다.
- ⑥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하고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수업일수) 주5일 수업을 전면으로 실시하는 경우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고사)

- ① 정기 고사는 학기당 1회 고사와 2회 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당해 교육청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따라 고사 횟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기타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수료 및 졸업 등)

- ① 학교장은 각 학년 과정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 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 성적을 산정하여 정한다.
- ② 각 학년의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졸업장[별지 서식]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재입학·전입학·편입학·휴학·퇴학

제18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제19조(입학시기)

- ① 입학시기는 학년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② 학생의 전(편)입학 또는 재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본교에서의 교육과정 이수능력을 판단하는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 정원 내에서 할 수 있으나 계열별(동일학과별) 전(편)입학은 3학년1학기말 이전까지로 하며, 계열을 달리 하는 전(편)입학은 2학년 1학기말 이전까지로 한다.

제20조(입학방법)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음 실용음악고등학교

신입생모집요강”에 의하여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선발하고 학교장이 이를허가한다.

제21조(재입학) 본교를 퇴학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 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퇴학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22조(전·편입학)

- ① 본교에 전·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는 결원이 있는 경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동일학년 또는 동 일학년 이하에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2항 및 제92조 제3항에 해당하는 귀국학생 등의전·편입학 시 학년배정은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상의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되, 9월 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하여 한 학기를 중복하여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편입학시 이를 감안하 여 한 학기를 올려서 학년배정을 하며, 외국학교에서 한 학기를 월반하여 학기를 이수한 경우에는 편입학 시 이를 감안하여 한 학기를 내려서 적절한 학년에 배정한다.단, 학제 차이가 아닌 사유에 의하여 이수한 학기 중복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외국에서 유치원, 어학연수(ESL),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④ 본교의 전·편입학 방법은 별도 계획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23조(휴학)

-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서 학교장에게 출원하 여야 한다.
-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마다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 ③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4조(자퇴) 스스로 퇴학(타 학교 전학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서 그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전·편입학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전·편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보증인)

- ①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 ② 입학(전입학, 재입학, 편입학 포함)을 허가받은 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보증인 연서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8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① 본교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이수인정평가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기졸업에 의한 졸업장은 제16조에 정하는 양식의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29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 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인정을 위하여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7장 수업료와 기타의 비용징수

제30조(수업료)

- ① 학교의 장은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제31조(수업료의 면제·감액)

- ① 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체육, 특기신 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에 대하여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 ② 수업료의 면제·감액방법, 대상 및 비율 등에 관하여는 서울시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비감면지침에 의한다.

제32조(기타비용의 징수 등)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기숙사비, 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제33조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하여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업료를 제외한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 한다.

① 전출시 외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1) 입학허가를 받은자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 2)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3) 재학중인 자가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4)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할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반환 사유 발생일

- 해당 월 또는 해당 분(반)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합격 등록일을 말한다)까지

반환액: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또는 수업료 분기 환산액

- 해당 월 또는 해당 분(반)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등록일 기준을 말한다)의 다음날 이후

반환액: 수업료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장 학생포상·징계·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34조(학교생활규정)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한다.

제35조(포상)

-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한자,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근면 성이 뛰어난 자, 봉사활동 실적이 뚜렷한 자,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공로가 있는 자, 각종 기능이 뛰어난 자, 또는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장학금)

- ① 학교장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장학생 선발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제37조(훈육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38조(징계 및 긴급조치)

-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 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학교 내의 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이수
 -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 퇴학처분
-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④ 학교의 장이 피해교원의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학생을 긴급하게 분리하거나 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31조 제1항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기타 필요한 교육적 조치

제39조(퇴학처분)

-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퇴학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 ②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고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40조(학생자치활동)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래음실용음악고등학교 학생자 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제41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10장 학칙개정절차

제42조(학칙개정 절차)

- ①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 ②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의견 반영 방법 등 학칙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43조(기숙사)

- ① 기숙사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학칙이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 ③ 이 학칙은 2019년 12월 16일부터 적용한다.